2019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목 차

Ⅰ. 동작구 옴부즈만 개요 ····· 1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1

2. 구성 및 임기 ····· 2

3. 직무 및 권한 ····· 3

4. 업무처리 절차 ····· 3

Ⅱ. 옴부즈만 운영성과 ····· 6

1. 고충·반복민원 운영성과 ····· 6

2. 고충민원 및 부서자문 주요 사례 ····· 8

3. 주요 처리사례 ····· 10

1) 의견표명

2) 기　　각

4. 기타 활동내용 ····· 13

Ⅲ. 참고자료 ····· 15

1. 주요 언론보도 내역 ····· 15

부록. 관련법령 ····· 22

Ⅰ. 동작구 옴부즈만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구성 및 임기

3. 직무 및 권한

4. 업무처리 절차

Ⅰ 동작구 옴부즈만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가. 도입배경

○ 현대의 행정은 다양화·복잡화·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재량권의 확대로 인해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 사후통제 수단으로 절차나 방법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용이 어려움

○ 이에 동작구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나.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 12. 21.

○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9. 7. 29.

○ 「동작구 옴부즈만」 모집공고 : 2019. 7. 30. ~ 8. 8.

○ 옴부즈만 지원신청서 접수 : 2019. 8. 9. ~ 8. 14.

○ 「동작구 옴부즈만」 선정심사 계획 수립 : 2019. 8. 16.

○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공고 : 2019. 8. 19.

○ 2차 면접심사(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 : 2019. 8. 20.

○ 제294회 동작구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 : 2019. 9. 5.

○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 2019. 9. 20.

다.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성 및 임기

가. 구성 및 임기

○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선　　발 : 공개모집 및 추천(서류 및 면접심사) ⇒ 구의회 동의 ⇒ 구청장 위촉

○ 운영형태 : 합의제

○ 구성인원 : 3명

성명	주요 경력
김태환 대표 옴부즈만	• 現 법률사무소 동일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現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김경목 옴부즈만	• 現 법무법인 울림 • 現 관악구 청림동 마을변호사
최주필 옴부즈만	• 現 법무법인 메리트 • 現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나. 자격요건(조례 제3조제3항)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직무 및 권한

가. 직무 관할(조례 제6조)

○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나. 주요 직무 및 권한(조례 제5조)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4. 업무처리 절차

① 민원접수	▪ 담당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이 민원 접수
② 조사여부 결정	▪ 제척·기피·회피 및 조사배제 사항 검토
③ 담당옴부즈만 결정	▪ 정례회의 시 담당옴부즈만 지정
④ 조사 착수 및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조사 착수 ▪ 조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조사사실 통보(옴부즈만 → 민원인)
⑤ 조사실시	▪ 서면·출석·실지조사
⑥ 심의·의결	▪ 정례회의 시 민원처리 결과 심의 및 의결
⑦ 조사종결 및 결과통보	▪ 처리결과 통보(부서 및 민원인)

○ 고충민원 신청방법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 조사여부 결정

정례회의 시에 조례 제13조제2항의 조사 배제사항 여부 검토 등 직접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담당 옴부즈만을 지정하고 민원인 및 관련부서에 조사 실시 통보

○ 고충민원 조사실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접수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종결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한 연장 가능

○ 조사결과 처리

조사가 완료되면 정례회의 시 전원합의를 통해 의결서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Ⅱ. 옴부즈만 운영 성과

1. 옴부즈만 운영성과

2. 고충민원 및 부서자문 주요 사례

3. 주요 처리사례

1) 의견표명
2) 기　　각

4. 기타 활동내용

Ⅱ 옴부즈만 운영성과

1. 옴부즈만 운영성과

가. 총 평

○ 동작구는 2017.1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구민의 고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 2019년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겪는 권리 침해나 불편 또는 부담으로부터 동작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동작구 옴부즈만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

○ 2020년에는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민원상담·부서자문 등을 통하여 더 많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해보고자 한다.

나.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계	접수방법			조사여부		
	방문민원	유선·우편민원	직권조사	직접조사	이해설득	이송이첩
5	2	2	1	3	1	1

다.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계	일반행정	교육문화	재무경제	보건복지	청소행정	주택건축	도시관리	도로교통
5	·	·	1	·	·	3	1	·

라. 조사민원 처리 결과 현황

(단위 : 건)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심의안내	각하이송	진행중
5	·	2	·	·	1	1	1	·

마. 민원관련 부서자문 현황

(단위 : 건)

계	일반행정	교육문화	재무경제	보건복지	청소행정	주택건축	도시관리	도로교통
4	3	·	·	·	·	·	·	1

2. 고충민원 및 부서자문 주요 처리 내역

가.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1	**○○동 건축현장 관리 미흡 등에 관한 민원** 건축현장 관리가 미흡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소음·먼지 피해 방지 요청	- 민원 조사내용을 토대로 건축과에 간이화장실 설치 관련 행정지도 등에 관한 의견표명	의견표명
2	**신노량진시장 출입통제 가림막 설치 행정대집행 적정여부 검토**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조합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동작구청의 행정대집행 적정여부 검토	- 신노량진시장 출입통제 가림막 설치 행정대집행은「행정대집행법」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는 없으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물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	의견표명
3	**조경면적 부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상담 요청 민원** ○○○동 빌라 거주자인 민원인은 조경면적 부족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거주자들은 조경면적 부족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시공사에서 매매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이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상담을 요청	- 구제절차 설명을 통한 이해 설득으로 민원 종결	이해설득

4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예정 부지 매입 등 요청 민원** 소유인의 ○○동 토지 중 인근 주민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예정 부지를 동작구청에서 매입하고, 위 토지에 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요청	- 건축선 후퇴로 인해 도로로 지정·공고 되어 사유지의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령상 보상규정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상할 수 없으므로 기각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사유지를 도로로 지정하면서 수용 또는 금전 보상 규정을 전혀 두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로 지정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건축주에 대한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견표명	기각
5	**양도소득세 이의 신청 민원**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주택이 토지로 변경되어 양도소득세가 4천1백만원 가량 나오게 되어 양도세가 과잉 추징되지 않도록 추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고충민원 신청	- 동작세무서 민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기관으로 이송	이송이관

나. 부서 자문 내역

연번	자문 요청 개요	관련 부서
1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조치 가능여부 등 법적검토 요청	복지정책과
2	세수 손실에 대한 변상명령 가능여부 등 법적검토 요청	감사담당관
3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법적검토 요청	감사담당관
4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목조계단 행정처분 검토요청	가로행정과

3. 주요 처리사례

1) 의견표명 사례

건축현장 관리 미흡 및 소음·먼지 피해 방지 요청

▶ 민원개요

- ○○동 공사현장에 현장 인부들이 소변을 함부로 봐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하고, 신고한 철거 공사 방법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아 소음 및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공사 현장에 오물·폐수가 방치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있고, 지반이 약해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하고 있으며, 토목공사 관련하여 자신의 집 담장으로부터 7m 떨어진 부분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

▶ 조사내용

- 공사현장 인부 소변 문제
  사실 확인 결과 소변으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철거 방법 미준수와 이로 인한 소음·먼지 발생 문제
  신고한 철거 공사 방법에 어긋나게 철거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음.
  소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2019.09.03. ~ 2019.10.16.까지 총 39회 측정을 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였으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2019.09.17. ~ 2019.10.17.까지 11회 현장 방문하였으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 공사 현장 오물·폐수 문제
  담당부서에서는 오물·폐수 방치관련 확인된 바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민원인이 제시한 사진에서는 오물·폐수 등이 발견됨.

- 이격거리 문제
  건축허가 시 민원인의 집 대지와 4.4 ~ 5.7m 이격되어 계획되어 있음.

▶ 조치의견

- 공사현장 인부들의 소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조치가 필요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소변 문제로 인해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이 화장실 설치 등을 포함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현장 오물·폐수에 대한 민원인이 제시한 사진 및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의견 표명함.

2) 기각 사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예정 부지 매입 등 요청

▶ 민원개요

- 신청인 소유의 ○○동 토지 중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 위 토지에 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를 요청함.

▶ 조사내용

- 본건 토지와 ○○동 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고, 그 도로는 1972년부터 인근 주민의 통행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본건 건물에 대해 1990.06.29.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구건축법에 따라 폭 3m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선 후퇴가 이루어져 본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음.

- 피신청인은 1990.06.29. 본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면서 배치도 및 건축물 대장에 도로가 기재됨에 따라 건축선 후퇴 부분은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건축선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2019.12. 경 도로로 공고할 예정임.

▶ 조치의견

- 건축선 후퇴로 인해 도로로 지정·공고 되어 사유지의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령상 보상규정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상할 수 없음.

- 건축법에 따라 사유지를 도로로 지정하면서 수용 또는 금전 보상 규정을 전혀 두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도로 지정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건축주에 대한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기타 활동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동작구 옴부즈만 방문 컨설팅

▶ **일　　시 : 2019.12.18.(수)**

▶ **장　　소 : 동작구청 4층 공직자윤리위원회실**

▶ **컨설팅단**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최준영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박영아
- 시흥시 지영림 시민호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담당자

▶ **참여 옴부즈만**

- 김경목 옴부즈만
- 최주필 옴부즈만

▶ **컨설팅 내용**

- 실효성 있는 지방옴부즈만 운영 방안
- 효과적인 옴부즈만 홍보 방안
- 고충민원 처리 기법 공유 등

▶ **현장사진**

Ⅲ. 참고 자료

1. 주요 언론보도

1. 주요 언론보도

문화일보 2019.09.30.

문화일보

주민 권익보호 '동작구 옴부즈만' 출범

기사입력 2019-09-30 12:31

내달 2일부터 고충민원 조사

정례회의 통해 시정 등 권고

서울 동작구는 구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동작구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행정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지난 20일 김태환 변호사 등 3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다음 달 2일부터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 민원 조사·합의·조정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구정 감시와 비위 시정에 대한 조치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행정 쟁송, 감사원 심사 청구, 법령상 화해·알선·조정 등 다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옴부즈만은 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시정 등 조치 권고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개인과 법인·단체는 동작구청 2층 감사담당관에 방문해 상담 또는 고충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옴부즈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감사담당관(02-820-9583)에 문의하면 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신아일보 2019.09.30.

동작구, 구민 권익보호 위한 옴부즈만 운영

허인 기자 | 승인 2019.09.30

9월 공모 통해 옴부즈만 3인 위촉…10월2일부터 활동

서울 동작구가 구민의 고충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동작구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행정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이번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9월 모집공고, 서류 및 옴부즈만 선발 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9월20일에 김태환 변호사 등 3명을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10월2일부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 민원의 조사·합의·조정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구정 감시 및 비위 시정에 대한 조치 권고 등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행정쟁송, 감사원 심사청구, 법령상 화해, 알선, 조정 등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고충민원 등은 담당 옴부즈만이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기간은 60일이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및 설명 요구 등의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옴부즈만 정례회의의 합의를 통해 시정 등 조치권고와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대상은 개인 및 법인·단체로 동작구청(장승배기로 161) 2층 감사담당관에 방문해 상담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옴부즈만 상세 근무시간은 구 홈페이지(종합민원→상담신고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제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부터 지역특성이 반영된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구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누구나 행복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동작'을 비전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아시아경제 2019.09.30.

아시아경제

동작구, 구민 권익보호 위한 옴부즈만 운영

기사입력 2019-09-30 06:50

9월 공개모집 통해 옴부즈만 3인 위촉…오는 10월2일부터 활동…고충·반복 민원 등의 조사·합의·조정 역할…중립자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직무수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구민의 고충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동작구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10월부터 운영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행정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이번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민원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9월 모집공고, 서류 및 옴부즈만 선발 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9월20일에 김태환 변호사 등 3명을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10월2일부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 민원의 조사·합의·조정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구정 감시 및 비위 시정에 대한 조치 권고 등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행정쟁송, 감사원 심사청구, 법령상 화해, 알선, 조정 등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고충민원 등은 담당 옴부즈만이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기간은 60일이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및 설명 요구 등의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옴부즈만 정례회의의 합의를 통해 시정 등 조치권고와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대상은 개인 및 법인·단체로 동작구청(장승배기로 161) 2층 감사담당관에 방문해 상담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옴부즈만 상세 근무시간은 구 홈페이지(종합민원>상담신고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820-95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제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지역특성이 반영된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구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누구나 행복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동작'을 비전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헤럴드경제 2019.09.30.

헤럴드경제

동작구, 구민 권익보호 위한 옴부즈만 운영

기사입력 2019-09-30 08:39

옴부즈만 3인 위촉...오는 10월2일부터 활동

동작구청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의 고충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동작구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행정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이번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으로 민원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9월 모집공고, 서류 및 옴부즈만 선발 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9월20일에 김태환 변호사 등 3명을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오는 10월2일부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 민원의 조사·합의·조정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구정 감시 및 비위 시정에 대한 조치 권고 등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쟁송, 감사원 심사청구, 법령상 화해, 알선, 조정 등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고충민원 등은 담당 옴부즈만이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기간은 60일이나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및 설명 요구 등의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옴부즈만 정례회의의 합의를 통해 시정 등 조치권고와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대상은 개인 및 법인·단체로 동작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해 상담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옴부즈만 상세 근무시간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제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뉴시스 2019.09.30.

NEWSIS

동작구, 구민 권익보호 위한 옴부즈만 운영

기사입력 2019-09-30 16:35

9월 공개모집 통해 옴부즈만 3인 위촉

【서울=뉴시스】 동작구청 전경. 2019.09.30. (사진=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의 고충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동작구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행정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이달 모집공고, 서류심사, 옴부즈만 선발 심사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20일에 김태환 변호사 등 3명을 동작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다음달 2일부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 민원의 조사·합의·조정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의 중재·조정 ▲구정 감시 및 비위 시정에 대한 조치 권고 등 직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쟁송, 감사원 심사청구, 법령상 화해, 알선, 조정 등 다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다루지 않는다.

담당 옴부즈만은 7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기간은 60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구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활동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시정 등 조치권고를 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옴부즈만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 구민은 동작구청(장승배기로 161) 2층 감사담당관에 방문해 상담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옴부즈만 상세 근무시간은 구 누리집에 게시돼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만 제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옴부즈만의 활동을 통해 구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2. 홍보내용

동작 소식 2019년 11월호(제5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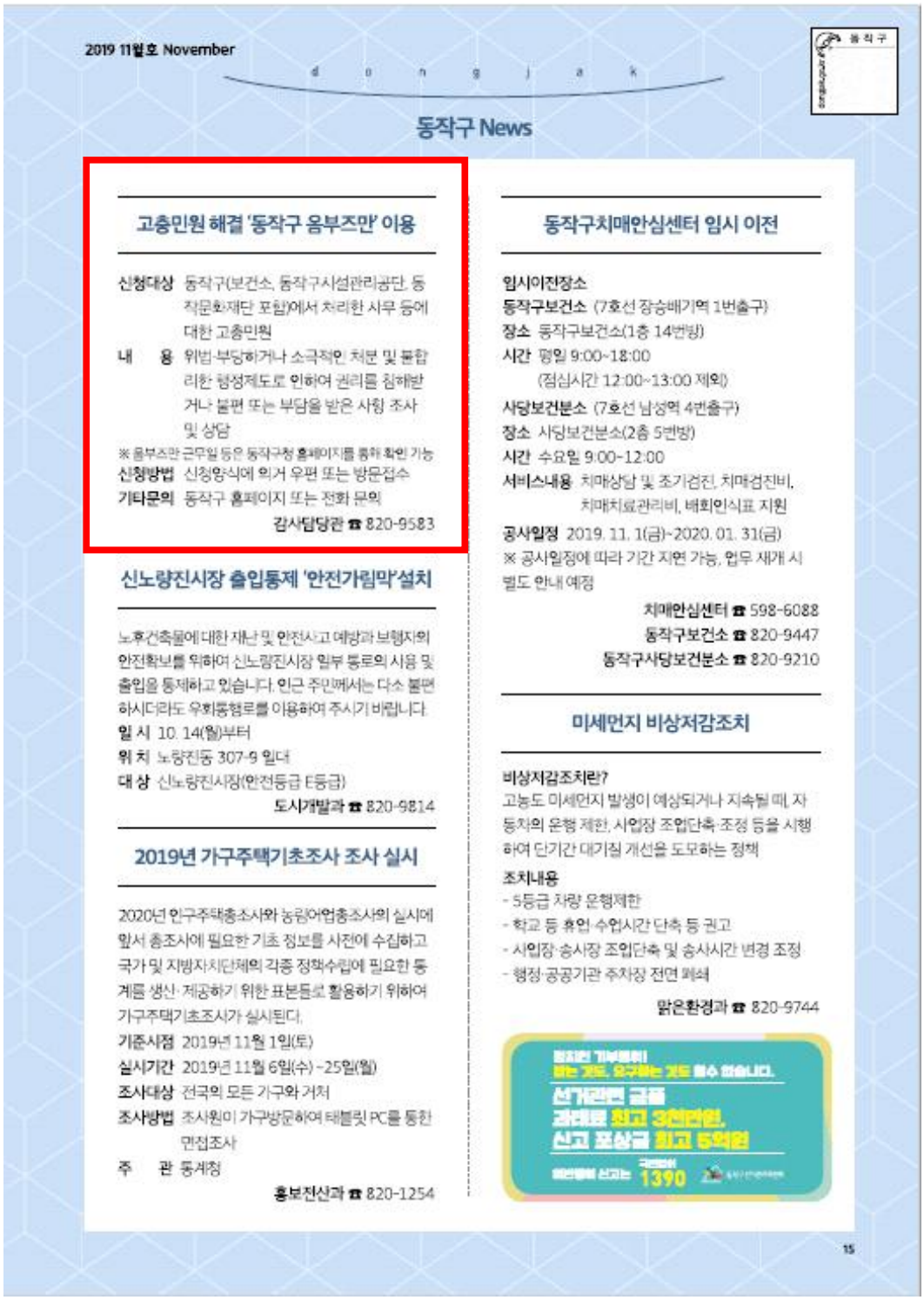

2019 11월호 November

d o n g j a k

동작구 News

고층민원 해결 '동작구 옴부즈만' 이용

신청대상 동작구(보건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내 용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은 사항 조사 및 상담

※ 옴부즈만 근무일 등은 동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방법 신청양식에 의거 우편 또는 방문접수

기타문의 동작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감사담당관 ☎ 820-9583

신노량진시장 출입통제 '안전가림막'설치

노후건축물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신노량진시장 일부 통로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회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10. 14(월)부터

위 치 노량진동 307-9 일대

대 상 신노량진시장(안전등급 E등급)

도시개발과 ☎ 820-9814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 실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앞서 총조사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제공하기 위한 표본틀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실시된다.

기준시점 2019년 11월 1일(토)

실시기간 2019년 11월 6일(수) ~25일(월)

조사대상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통한 면접조사

주 관 통계청

홍보전산과 ☎ 820-1254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임시 이전

임시이전장소

동작구보건소 (7호선 장승배기역 1번출구)

장소 동작구보건소(1층 14번방)

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사당보건분소 (7호선 남성역 4번출구)

장소 사당보건분소(2층 5번방)

시간 수요일 9:00~12:00

서비스내용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배회인식표 지원

공사일정 2019. 11. 1(금)~2020. 01. 31(금)

※ 공사일정에 따라 기간 지연 가능, 업무 재개 시 별도 안내 예정

치매안심센터 ☎ 598-6088
동작구보건소 ☎ 820-9447
동작구사당보건분소 ☎ 820-921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조치내용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학교 등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 사업장·송사장 조업단축 및 송사시간 변경 조정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맑은환경과 ☎ 820-9744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1390

15

부록.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4.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5.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6.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직무 관할) 옴부즈만이 제5조의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7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사・처리 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등)

①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관계기관,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결과에 대해 구청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1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